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안내

2012. 4.

목 차

I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1
II . 구체적인 적용방법	2
1.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직접투자 등)	2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간접투자)	3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4
4. 제한세율 적용시 특례	6
III . 제한세율 적용배제	7
IV . 경쟁청구 등	8
1. 경쟁청구	8
2. 자료의 보관 및 제출	8

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개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관련근거

- 법인세법 §98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의7
- 소득세법 §156의6, 소득세법시행령 §207의7

□ 적용시기

-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참고> '제한세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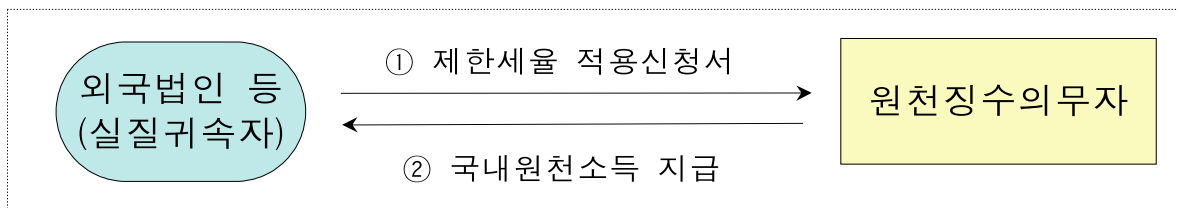
-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함(국조법§2①12)

II. 구체적인 적용방법

1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직접투자 등)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실질귀속자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실질귀속자가 제출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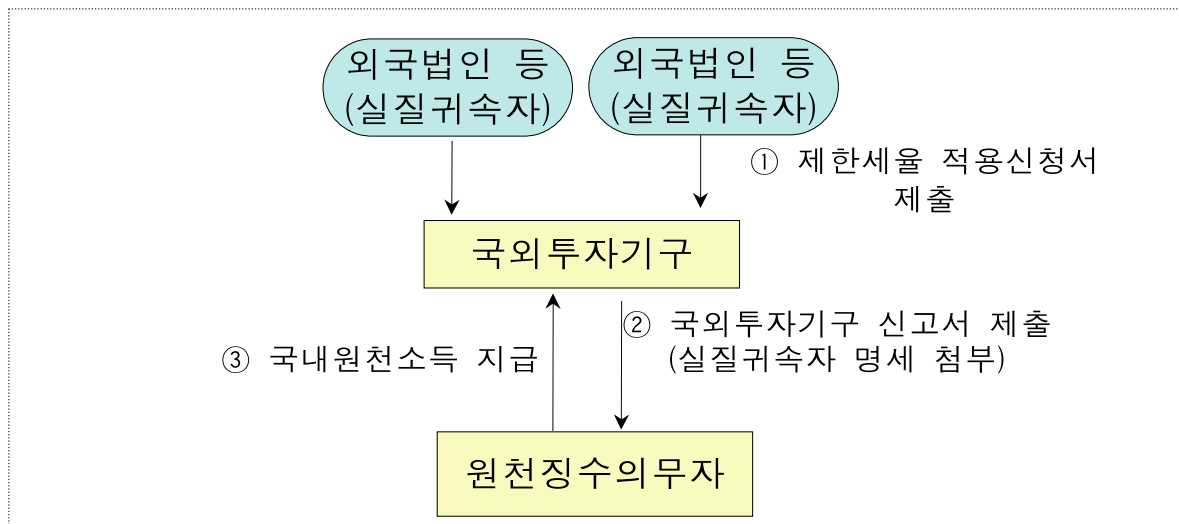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 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간접투자)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국외투자기구→원천징수의무자)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하고
 - 이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첨부 서류인 실질귀속자 명세 및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적정한 경우 실질귀속자 명세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요건

* 국외투자기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외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②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③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등을 작성하고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절차 간소화 내용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해외발행 예탁증서 투자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는 연·기금 등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 투자기구

* 한·호주 개정 조세조약('10.10.8 가서명)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계약 당사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

III. 제한세율 적용배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

-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도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한세율은 적용가능

□ 조세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경우

-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예)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IV. 경정청구 및 자료의 보관 등

1 경정청구

- (개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방법)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하여야 함(소령207의9①, 법령§138의8①)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보정요구)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의 보정필요시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가능(소령207의7③, 법령§138의6③)
 - * 보정요구 기간은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6개월)에 포함하지 않음

2 자료의 보관 및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제출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Q&A

2012. 4.

목 차

I. 제도 일반

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특례는? 1
2. 절차 특례신설의 법적근거는? 1
3. 절차 특례신설의 취지는? 1

II.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방법

4.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2
5. 미국거주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6. 영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7.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유효기간은? 3
8. 이자, 배당, 사용료 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3
9.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적용방법? 3
10. 기존 개설계좌의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 3
11.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의 경우는? 4
12. 관련 서류의 사본접수가 가능한지? 4
13. 영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지? 4
14. 연금, 비영리외국법인 등의 취급은? 4

Ⅲ.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제한세율 적용방법

- 15. 국외투자기구란? 5
- 16.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5
- 17.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는? 5
- 18. 실질귀속자 일부만 파악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은? 5
- 19. 사모펀드의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6
- 20. 공모펀드의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6
- 21.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7
- 22. 국외투자기구 설립시 투자자가 100명미만인 경우? 7
- 2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국가별 총투자금액 작성 기준일은? 7
- 24.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될 수 있는지? 8
- 25.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8
- 26.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실질귀속자 수가 100명미만인 경우? 8

Ⅳ. 제한세율 적용배제

- 27.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미제출 등의 경우 적용세율은? 9
- 28.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9

V. 경정청구 등

- 29.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10
- 30. 국외투자기구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10
- 31.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10

VI. 기타(비과세면제신청, 지급명세서 제출 등)

- 32. 비과세·면제 신청시에도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작성하는지? 11
- 33. 지급명세서 제출시 실질귀속자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11

I. 제도 일반

1.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특례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의 법적 근거는?

- 「소득세법」 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207조의 9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 8 등입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신설의 취지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II.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방법

4.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정보, 제한세율 적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6. 내국법인 A가 영국법인 B(실질귀속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B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A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7.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유효기간은?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외국법인 등이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제한세율 적용신청제도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모든 제한세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미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10.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기존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도 제한세율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 이전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도 2012년 7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11. 비거주자가 요구불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2012년 7월 1일 이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12.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 서류의 사본접수가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본 접수가 곤란한 경우 e-mail, 팩스 등을 통한 사본접수도 가능합니다.

1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영문본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한글서식 작성이 곤란한 경우 관련 영문서식(참고용)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14. 연금,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어떻게 취급하나요?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과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은 이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 이 경우 연금, 비영리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이 때 해당 비영리단체 등이 설립된 계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Ⅲ.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제한세율 적용방법

15. 국외투자기구란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투자배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국외에서 설립된 형태와 관련없이 상기에 해당하면 국외 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16.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는?

- 국외투자기구의 대표자 또는 서식의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18. 제출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 중 일부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 예 그렇습니다.

- 제출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도 실질귀속자를 전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9. 싱가포르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싱가포르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동 사모펀드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실질귀속자인 싱가포르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및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사모펀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동 공모펀드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 공모펀드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의8③,법령138의7③)에 해당함

-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비율 명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의8③, 법인세법 시행령 §138의7③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2. 국외투자기구 설립시 투자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 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 수가 100명 미만일 때에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 명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할 때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은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 신고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또는 지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또는 지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26.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상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의 ‘⑭ 실질귀속자 수’가 공란이거나 100명 미만인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 ‘⑭ 실질귀속자 수’가 공란이거나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제한세율 적용 배제

27. ①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②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③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도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은?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8.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①, 법법§98①, 지방세법§89①)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 반영*
○ 이자 및 신탁의 이익 (채권 이자소득)	20% (14%)	22% (15.4%)
○ 배당소득 ○ 인적용역 제공소득 ○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 기타소득	20%	22%
○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

V. 경정청구 등

29.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제156조의 6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국외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6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1.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VI. 기타(비과세면제신청, 지급명세서 제출 등)

32.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절차(소법§156의2, 법법§98의4)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지급명세서 제출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실질귀속자 개별 내역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국외투자기구별로 제출하되 적용세율의 합계로서 제출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실질귀속자 개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급명세서에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기재하고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작성사례

2012. 4.

목 차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례

- 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
- 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2

2. 국외투자신고서 등 작성례

- 가.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3
-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7
- 다.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9
- 라.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1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신설 2012.2.28>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법인, [] 연금, [] 기금,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기타())		
② 법인명	ABC INC.	⑥ 주소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③ 대표자 성명	HONG GILDONG	⑦ 거주지국	UNITED STATES
④ 납세자번호	21-123456	⑧ 국가코드	US
⑤ 설립연월일	1991.01.01	⑨ 전화번호	053-1234-56789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 ⑩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제 13조 제 2항 제 호 이자 소득 세율 12 %
 제 12조 제 2항 제 가호 배당 소득 세율 15 %
 제 14조 제 2항 제 호 사용자 소득 세율 10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 ⑪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아니오 [√]
 ⑫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아니오 [√]
 ⑬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아니오 [√]
 ⑭ 거주지국의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⑮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아니오 []
 ⑯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아니오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 신청인은 위 ⑪ ~ ⑬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인은 위 ⑭ 또는 ⑮ 중 하나에 아니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⑯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신청인(대표자)

HONG GILDONG *HONG GILDONG* (서명 또는 인)

(주) 가나다 귀하

첨부서류	⑪, ⑫, 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대리인	⑰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그 외 대리인	⑱ 성명 또는 법인명	⑲ 사업자(주인)등록번호
	⑳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i>HONG</i> (First Name) <i>JOHN</i>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i>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i> (국내 거소) <i>서울 종로구 수동동 104</i>	
③ 납세자번호 <i>21-1234567</i>	④ 생년월일 <i>1971.01.01</i>
⑤ 거주지국 <i>United States</i>	⑥ 거주지국코드 <i>US</i>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i>053-1234-1367</i> (국내 전화) <i>02-1234-5678</i>	
⑧ 국내체제일 []없음 (최근 1년간) <u>10</u> 일 (최근 2년간) <u>20</u>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 ⑩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제 13조 제 2항 제 호 이자 소득 세율 12 %
 제 12조 제 2항 제 가호 배당 소득 세율 15 %
 제 14조 제 2항 제 호 사용료 소득 세율 10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365일 이상입니까?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i>미국</i>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고, 본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4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 청 인

HONG JOHN HONG JOHN (서명 또는 인)

(주) 가나다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제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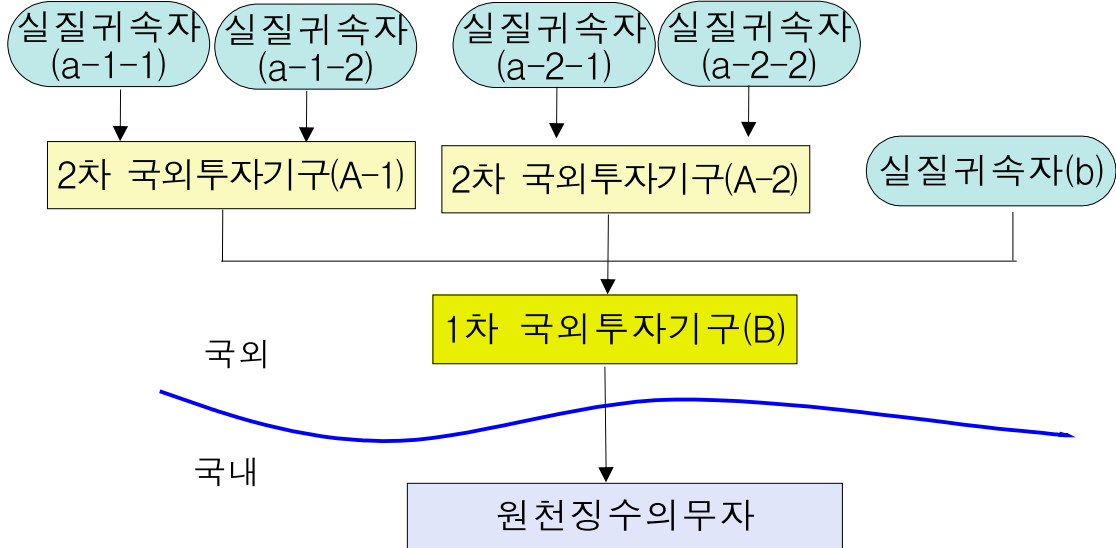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HONG JOHN 고객 명

HONG JOHN (서명 또는 인)

2. 국외투자신고서 등 작성례

가.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 2차 국외투자기구(A-1, A-2)

- ① 실질귀속자(a)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② 작성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B)에 송부

□ 1차 국외투자기구(B)

- ③ A-1 및 A-2가 송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B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b)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1차 국외투자기구는 ①~③의 과정을 거쳐 2차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명세'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작성

○ 2차 국외투자기구(A-1)가 작성하는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⑰ 명칭 <i>A-1</i>	⑱ 대표자 성명 <i>Hong Gil Dong</i>	⑲ 설립연월일 <i>2010.1.1.</i>	⑳ 전화번호 <i>123-1234-5678</i>
㉑ 주소 <i>2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i>			
㉒ 설립지국 <i>USA</i>		㉓ 국가코드 <i>US</i>	
㉔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파트너십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고인

Hong Gil Dong Hong Gil Dong (서명 또는 인)

○ 1차 국외투자기구(B)가 작성하는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⑰ 명칭 <i>B</i>	⑱ 대표자 성명 <i>Hong Gil Dong</i>	⑲ 설립연월일 <i>2010. 01.01</i>	⑳ 전화번호 <i>123-456-5868</i>
㉑ 주소 <i>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i>			
㉒ 설립지국 <i>CANADA</i>		㉓ 국가코드 <i>CA</i>	
㉔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파트너십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고인

Hong Gil Dong Hong Gil Dong(서명 또는 인)

□ **실질귀속자 명세(이자소득) 작성**

○ 2차 국외투자기구(A-1)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주1)}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1-1)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30	3.96
BO	2	실질귀속자 (a-1-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70	7
⑨ 합계						100	10.96

주1) '⑥ 적용세율' 란은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 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기재.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예, 20%×1.1=22%)을 기재.

상기 사례에서 한-미 조세조약은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경우 적용세율에 12% × 1.1 = 13.2%를 기재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0%를 기재

○ 2차 국외투자기구(A-2)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2-1)	102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40	5.28
BO	2	실질귀속자 (a-2-2)	102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ustralia	AU	15	60	9
⑨ 합계						100	14.28

○ 1차 국외투자기구(B)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주2)}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주3)}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b)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Hongkong.	HK	22	26.4352	5.8157
V	1	2차 투자기구 (A-1)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공란)	10.96	50	5.48
V	2	2차 투자기구 (A-2)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공란)	14.28	23.5648	3.3651
⑨ 합계						100	14.6608 ^{주4)}

주2) ①구분 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 해당 국외투자 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음

주3) 당해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란에 기재된 세율을 옮겨 적음.

주4) ‘㉑징수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음(예: XX.XXXX%)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㉗ 주민(사업자)등록번호	㉖ 성명(상호)	㉗-1 비거주자 생년월일	㉙ 주 소	㉙-1 거주지국코드	㉕ 세율(%) <small>주5)</small>	㉔ 지급액(소득금액)	㉔, ㉕ 소득(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㉚ 계
XXXXXX1	실질귀속자(b)	1987.12.01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Hongkong.	HK	22	264,352	52,870	5,287	58,157
XXXXX11	실질귀속자(a-1-1)	1975.04.02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150,000	18,000	1,800	19,800
AXXXXXX	실질귀속자(a-1-2)	1954.03.0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350,000	31,818	3,182	35,000
BXXXXX5	실질귀속자(a-2-1)	1960.04.03	102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94,259	11,311	1,131	12,442
FXXXXX6	실질귀속자(a-2-2)	1945.12.23	102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ustralia	AU	15	141,389	19,280	1,928	21,208
합계						1,000,000	133,280	13,328	146,608 <small>주6)</small>

주5) 세율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세율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의 포함여부에 불구하고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반영된 세율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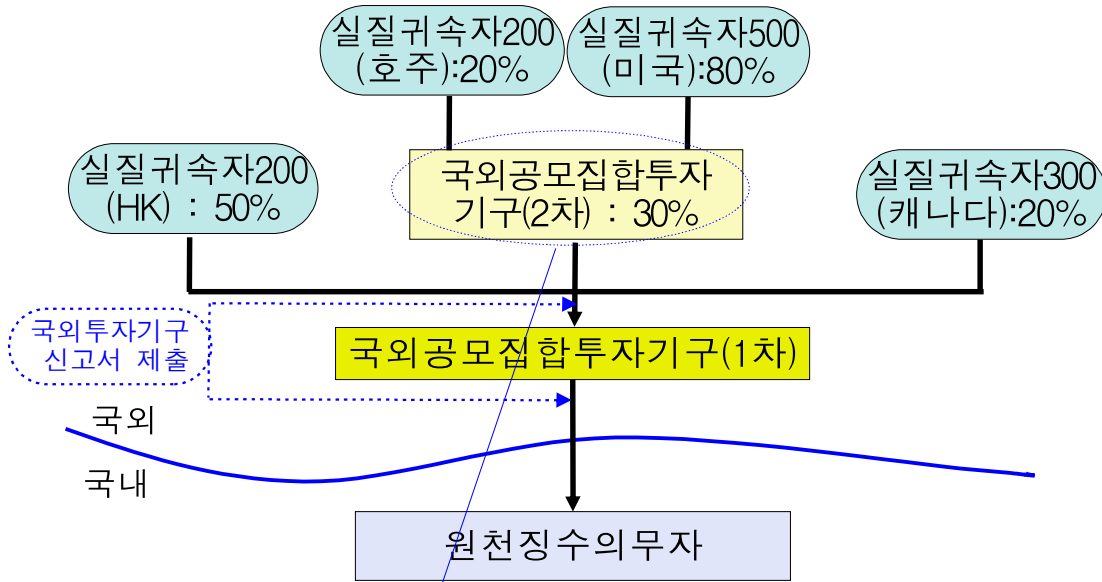
예) 미국 : 12% × 1.1 = 13.2

세율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6) 146,608 : 징수하는 세액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일치함

소득금액(1,000,000) × ㉑징수세율의 합계(14.6608%) = 146,608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가 작성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주1)}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⑭ 실질귀속 자 수	⑮ 적용세율(%) ^{주2)}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United States	800,000	80	500	13.2	16.5	11
Australia	200,000	20	200	15	15	15
⑯ 합계	1,000,000	100%	700	13.56	16.2	11.8

주1)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은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기재함.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출 가능

주2) '⑮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가 작성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⑭ 실질귀속 자 수	⑮ 적용세율(%) ^{주4)}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Canada	100,000	20	300	10	5	10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 ^{주3)}	150,000	30	1	13.56	16.2	11.8
HK	250,000	50	200	22	22	22
⑯ 합계 ^{주5)}	500,000	100%	501	17.068	18.86	16.54

주3)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음

주4) 다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

주5) '㉔적용세율의 ㉔ 합계' 계산례

- 이자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 \times 10\%) + (30\% \times 13.56\%) + (50\% \times 22\%) = 17.068\%$
- 배당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 \times 15\%) + (30\% \times 16.2\%) + (50\% \times 22\%) = 18.86\%$
- 사용료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 \times 10\%) + (30\% \times 11.8\%) + (50\% \times 22\%) = 16.54\%$

□ '㉔적용세율 ㉔ 합계' 계산방법 : $e\%$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㉔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㉔ 실질귀속 자 수	㉔ 적용세율(%)		
	㉔ 금액(단위:)	㉔ 비율(%)		소득	소득	소득
		$a\%$		$b\%$		
		$c\%$		$d\%$		
㉔ 합계		100%		$e\%$ ^{주6)}		

주6) 적용세율의 합계 : $e\% = (a\% \times b\%) + (c\% \times d\%)$

b% 및 d%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이 반영된 세율

$$a\% + c\% = 100\%$$

㉔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음.(예: XX.XXXX%)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㉔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㉔ 성명(상호)	㉔ 주 소	㉔-1 거주 지국코드	㉔ 세율 (%) ^{주7)}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㉔㉔ 소득 (법인)세	㉔ 지방 소득세	㉔ 계
XXXXXXX	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1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HK ^{주6)}	17.068 ^{주7)}	1,000,000	155,164 ^{주8)}	15,516	170,680

주6) HK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7) 17.068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㉔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8) 155,164 :

소득금액(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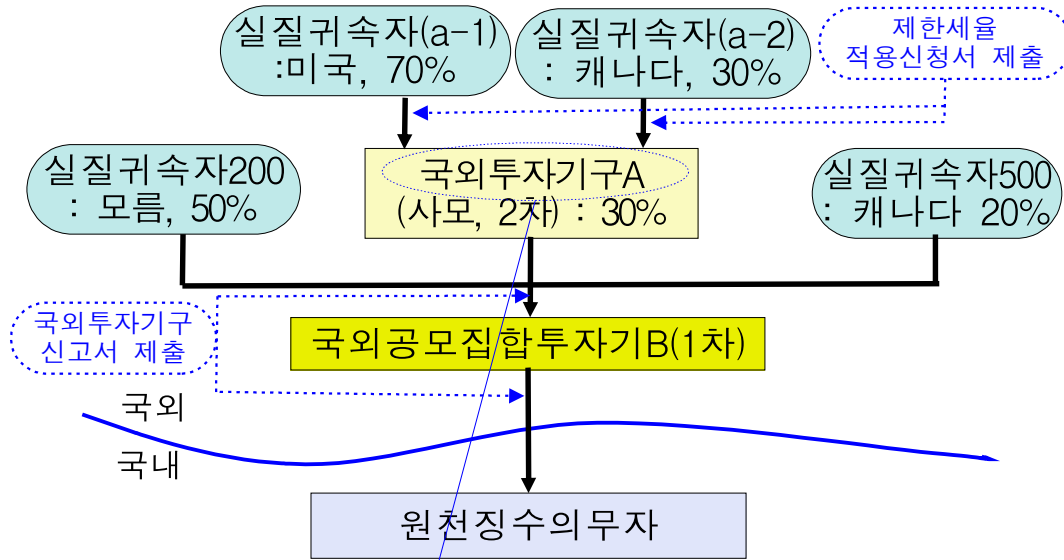
× 적용세율(17.068%)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㉔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7.068%)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155,164$$

다.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투자기구(사모, 2차) : 실질귀속자 명세

- ① 실질귀속자(a)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국외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② 작성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 투자기구(B)에 송부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주1)}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1)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30	3.96
BO	2	실질귀속자 (a-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70	7
⑨ 합계						100	10.96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 :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주1)}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Canada	100,000	20	500	10	15	10
국외투자기구A	150,000	30	1	10.96	15.45	11.95
ZZ	250,000	50	200	22	22	22
⑯ 합계	500,000	100%	701	16.288	18,635	16.585

- 국외투자기구나(사모, 2차)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나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를 참고하여 국외투자기구나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 금액 등 현황'을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나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나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나 신고서에 기재된 국외투자기구나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음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⑦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⑨ 주 소	⑪-1 거주 지국코드	⑫ 세율 (%) ^{주1)}	⑭ 지급액 (소득금액)	⑮⑯ 소득 (법인)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XXXXXXX	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B(1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주1)}	ZZ ^{주2)}	16.288 ^{주3)}	1,000,000	148,073 ^{주4)}	14,807	162,880

주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급명세서상 주소는 설립된 국가의 소재지를 기재

주2) ZZ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본 사례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총투자금액 비율이 가장 크므로 'ZZ'를 기재하였음

주3) 16.288 : 국외투자기구나 신고서의 ⑫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4) 148,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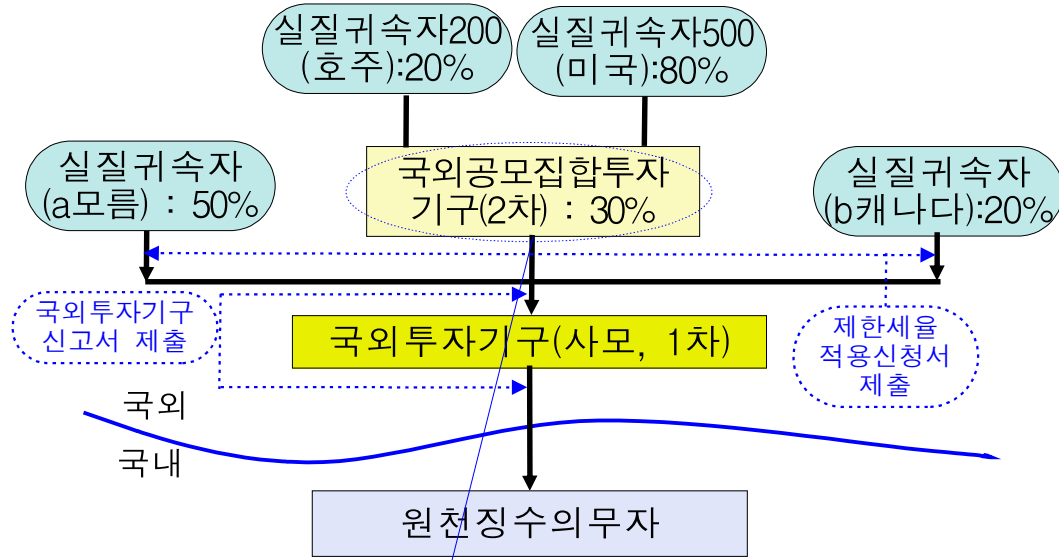
소득금액(1,000,000)

×적용세율(16.288%)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⑫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6.288%)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148,073

라.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 :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⑭ 실질귀속 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United States	400,000	80	500	13.2	16.5	11
Australia	100,000	20	200	15	15	15
⑯ 합계	500,000	100%	700	13.56	16.2	11.8

□ 1차 국외투자기구(B) :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a)	ZZ	ZZ	22	50	11
BO	2	실질귀속자(b)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20	2
V	1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2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주1)}	13.56 ^{주2)}	30	4.068
					⑨ 합계	100	17.068

주1)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여 실질귀속자 명세에 기재하는 경우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 (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2) 국외투자기구에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용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⑦-1 주자 월일	비거 생년	⑨ 주 소	⑪-1 거주지국코드	⑫ 세율 (%)	⑭ 지급액 (소득금액)	⑮⑯ 소득 (법인)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XXXXXXXX	실질귀속자(a)	1987.12.01		ZZ	ZZ	22	500,000	100,000	10,000	110,000
XXXXXXXX	실질귀속자(b)	1975.04.02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200,000	18,182	1,818	20,000
XXXXXXXX	국외공모집합 투자지구(2차)	(공란)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주3)}	13.56 ^{주4)}	300,000	36,982 ^{주5)}	3,698	40,680
	합계						1,000,000	155,164	15,516	170,680

주3) **US**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4) **13.56** : 국외투자지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5) **36.982**

소득금액(300,000)

×적용세율(13.56%)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⑮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3.56%)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36,982

* 다음 비율의 합계

①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

②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

즉, 13.56% = (13.2% × 80%) + (15% × 20%)